#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

2023. 9.

법제사법위원회

# 목 차

1. 감사의 목적	• 1
2. 감사기간	• 1
3. 감사실시 대상기관	• 2
4. 감사반의 편성	• 4
5. 감사일정 및 장소	• 7
6. 감사요령	. 8
7.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• 10
8. 행정사항	• 10

#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

### 1. 감사의 목적

헌법 제61조, 「국회법」 제127조 및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심사 및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감사기간

○ 2023년 10월 10일(화) ~ 10월 27일(금)

## 3. 감사실시 대상기관(총 80개)

## 가.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(79개 기관)

(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호·제2호·제3호 해당기관)

구 분	기 관 명	법률」 제7조 제1호·제2호·제3호 해당기관) <b>비 고</b>
지1호 (국가기관)	이법 무 부 청 이 대 검 잘 청 장 하는 지 한 점 한 지 한 점 한 점 한 청 한 점 한 청 한 점 한 청 한 점 한 청 한 점 한 청 한 점 한 점	<b>미 고</b> ■법무부 소관 (26)
	o 법제처	■법제처 소관 (1)
	○ 감사원	■감사원 소관 (1)
	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	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(1)
	○ 헌법재판소(사무처) ○ 헌법재판연구원	■헌법재판소 사무 (2)
	○대법원(법원행정처) ○사법연수원 ○사법정책연구원 ○법원공무원교육원 ○법원도서관 ○양형위원회 ○윤리감사관 ○서울고등법원 ○대전고등법원 ○대구고등법원 ○부산고등법원 ○광주고등법원 ○수원고등법원	■법원 사법행정 (44)

구 분	기 관 명	비고
	ㅇ 특 허 법 원	
	o 서울중앙지방법원	
	○ 서울가정법원	
	<ul><li>서울행정법원</li></ul>	
	<ul><li>서울회생법원</li></ul>	
	○서울동부지방법원	
	○서울남부지방법원	
	○서울북부지방법원	
	<ul><li>어울서부지방법원</li></ul>	
	o 의정부지방법원	
	○ 인천지방법원	
	○ 인천가정법원	
	○ 춘천지방법원	
	이 대전지방법원	
	이 대전가정법원	
	o 청주지방법원	
	이 대구지방법원	
	이대구가정법원	
	○ 부산지방법원	
	○ 부산가정법원	
	○ 부산회생법원 ○ 사람에 이	
	○ 울산지방법원 ○ 요시 기계 의	
	○울산가정법원 - 집 의 및 및 의	
	○ 창원지방법원	
	o 광주지방법원	
	o 광주가정법원	
	o 전주지방법원	
	o 제주지방법원	
	○ 수원지방법원 ○ 수 이 기 기 비 이	
	o 수원가정법원	
	o 수원회생법원	
	○ 군사법원	■군사법원 사법행정 (1)
제3호	o 대한법률구조공단	
	○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	■법무부 소관 (3)
(공공기관 등)	o 정부법무공단	
계	79개 기관	

## 나.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(1개 기관)

(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4호 해당기관)

구 분	기 관 명	비고
제4호	ㅇ이민정책연구원	■법무부 소관 (1)
계	1개 기관	

## 4. 감사반의 편성

## 가. 감사위원(17인)

직 위	교섭단체	성 명	비고
위원장	국민의힘	김 도 읍	
		소 병 철	간 사
		권 칠 승	
		김 승 원	
		김 영 배	
위 원	더불어민주당	김 의 겸	
		박 범 계	
		박 용 진	
		박 주 민	
		이 탄 희	
		정 점 식	간 사
		박 형 수	
위 원	국민의힘	유 상 범	
T) 70		장 동 혁	
		전 주 혜	
		조 수 진	
위 원	비교섭단체 (시대전환)	조 정 훈	

## 나. 사무보조자

## ㅇ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공무원

직 위	성 명
수석전문위원	정 성 희
전문위원	한 석 현
전문위원	김 영 일
전문위원	박 동 찬
입법조사관(3급)	신 은 호
입법조사관(3급)	이 강 혁
행정실장	김 익 두
입법조사관(4급)	박 지 영
입법조사관(4급)	모 주 영
입법조사관(4급)	이 정 미
입법조사관(4급)	정 수 정
입법조사관(4급)	문 정 호
입법조사관(5급)	소 만 경
입법조사관(5급)	임 동 훈
입법조사관(5급)	박 효 민
입법조사관(5급)	이 영 준
입법조사관(5급)	황 현 진
입법조사관(5급)	박 은 정
입법조사관(5급)	이 정 윤
입법조사관(5급)	박 진 영
입법조사관(5급)	이 상 민
입법조사관(5급)	김 홍 규
입법조사관(6급)	김 동 길
주무관(6급)	김 수 자
주무관(6급)	박 경 덕
주무관(6급)	이 미 숙
주무관(6급)	오 진 숙
주무관(6급)	임 현 숙
주무관(6급)	이 지 영
행정관(7급)	임 채 현
행정관(7급)	김 기 연
자문위원(부장판사)	장 철 웅
파 견 관 자문위원(부장검사)	장 준 호
자문관(헌법연구관)	남 상 규
입법조사관(4급)	서 홍 석
계	35 인

## ㅇ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 보좌진 (17인)

## ㅇ 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(2인)

교섭단체	성 명
더불어민주당	손 민 호
국민의힘	이 서 연

## ㅇ 속기사 (5인)

직 위	성 명
주무관(6급)	기 자 영
주무관(6급)	유 준 호
주무관(6급)	박 승 연
주무관(7급)	김 수 정
주무관(9급)	김 도 경

# 5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자	시 간	대 상 기 관	장 소	비	고
10. 10.(화)	10:00	대법원(법원행정처)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, 양형위원회, 윤리감사관	대법원		
10. 11.(수)	10:00	법무부,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정부법무공단, 이민정책연구원	국 회		
10. 12.(목)		자 료 정 리			
10. 13.(급)	10:00	감 사 원	국 회		
10. 16.(월)	10:00	헌법재판소(사무처), 헌법재판연구원	국 회		
10. 10.(包)	14:00	군 사 법 원	국방부		
10. 17.(화)	10:00	서울고검, 수원고검, 서울중앙지검, 서울동부지검, 서울남부지검, 서울북부지검, 서울서부지검, 의정부지검, 인천지검, 춘천지검, 수원지검	서울고등 검찰청		
10. 18.(수)		자 료 정 리			
10. 19.(목)	10:00	법 제 처	국 회		
10. 13.(7)	14: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	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	7 4		
10. 20.(금)	10:00	대전고법, 대구고법, 부산고법, 광주고법, 특허법원, 대전지법, 대전가정, 청주지법, 대구지법, 대구가정, 부산지법, 부산가정, 부산회생, 울산지법, 울산가정, 창원지법, 광주지법, 광주가정, 전주지법, 제주지법	국 회		
10. 20.(금)	14:00	대전고검, 대구고검, 부산고검, 광주고검, 대전지검, 청주지검, 대구지검, 부산지검, 창원지검, 울산지검, 광주지검, 전주지검, 제주지검	4 4		
10. 23.(월)	10:00	대 검 찰 청	대검찰청		
10. 24.(화)	10:00	서울고법, 수원고법, 서울중앙지법, 서울가정, 서울행정, 서울희생, 서울동부지법, 서울남부지법, 서울북부지법, 서울서부지법, 의정부지법, 인천지법, 인천가정, 춘천지법, 수원지법, 수원가정, 수원희생	서울고등법원		
10. 25.(수)		자 료 정 리			
10. 26.(목)	10:00	<종 합 감 사> 법무부, 법제처, 감사원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헌법재판소, 대법원	국 회		
10. 27.(금)		자 료 정 리			

#### 6. 감사요령

#### 가. 감사진행원칙

- O 국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, 서류등 제출요구,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, 현지시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O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  -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하고,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  -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 자료(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O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 의결로 정한다.
- O 그 밖에 감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#### 나. 보고 및 서류등의 제출 요구

- 0 보고 요구
  -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한다.
    -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
    -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
    - 2022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
  -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보고자료를 모든 위원실에 국정감사 전에 제출한다.
- Ο 서류등의 제출 요구
  - 위원회 의결에 의한 요구
    - 각 감사위원은 서류등의 제출을 위원회 의결 1일 전까지 의정자료전자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하고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.
    - 서류제출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한다.

-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등 제출요구
  - 위원회 의결 이후에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등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원장 명의로 피감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다.
- 서류등 제출 거부에 대한 소명이나 성명은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다.

#### 다. 증인 등의 출석요구

- O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출석요구의 철회는 위원회 의결로 한다.
- O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증인(기관증인)은 기관장과 부서장으로 한다.
  - 증인 채택 대상 직위가 공석인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한다.
  - 증인 채택 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임명된 자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한다.

#### 라. 증인 선서

- O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하여야 한다.
- O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,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한다.
- O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.
- O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이 기립하여 대표로 받는다.
-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.

#### 마. 감사진행 및 순서

- 1) 감사개시 선언(위원장)
- 2) 위원장 모두발언
- 3) 선서 취지 및 법적 효력 고지
- 4) 증인 선서
- 5) 감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
- 6) 업무현황보고 청취
- 7) 질의 및 답변(또는 증인 신문 및 증언)
- 8) 감사종료 선언(위원장)

#### 7.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

- O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정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.
- O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O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.

#### 8. 행정사항

- O 감사활동비, 출장여비, 증인·참고인 등 출석여비 등 제반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
- O 국정감사 일정·장소 등 세부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.